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16604

제안연월일 : 2026. 2.

제 안 자 : 법제사법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심사경과

연번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제출자)	발의일 (제출일)	심사 경과
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0448호)	곽규택의원 등 15인	2024.6.13.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4.8.23.) 상정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2.24.) 상정/심사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7.25.) 상정/심사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8.25.) 상정/심사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11.20.) 상정/심사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2026.1.21.) 상정/심사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6.2.3.) 상정/심사
2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1016호)	전재수의원 등 11인	2024.6.27.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6차 전체회의(2024.9.23.) 상정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2.24.) 상정/심사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7.25.) 상정/심사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8.25.) 상정/심사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11.20.) 상정/심사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2026.1.21.) 상정/심사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6.2.3.) 상정/심사

연번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제출자)	발의일 (제출일)	심사 경과
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9261호)	윤상현의원 등 10인	2025.3.21.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회부(2025.7.24.)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7.25.) 상정/심사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8.25.) 상정/심사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11.20.) 상정/심사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2026.1.21.) 상정/심사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6.2.3.) 상정/심사
4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10123호)	정일영의원 등 12인	2025.4.25.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회부(2025.7.24.)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7.25.) 상정/심사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8.25.) 상정/심사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11.20.) 상정/심사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2026.1.21.) 상정/심사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6.2.3.) 상정/심사
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10180호)	박찬대의원 등 11인	2025.4.28.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회부(2025.7.24.)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7.25.) 상정/심사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8.25.) 상정/심사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11.20.) 상정/심사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2026.1.21.) 상정/심사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6.2.3.) 상정/심사
6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10425호)	배준영의원 등 13인	2025.5.8.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회부(2025.7.24.)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7.25.) 상정/심사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8.25.) 상정/심사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11.20.) 상정/심사

연번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제출자)	발의일 (제출일)	심사 경과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2026.1.21.) 상정/심사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6.2.3.) 상정/심사

나.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2.3.)는 이상 6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들 6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취지와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다.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2026.2.4.)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현재 우리나라는 선박건조량 세계 1위, 지배선대 규모 세계 4위, 무역 규모 세계 7위, 국제항공화물 처리량 세계 2위의 해운·조선·무역 강국이고, 해사 관련 분쟁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및 고등법원 등에 해사전담재판부가 설치되어 있으나, 해사전담재판부가 지닌 구조적·기능적 한계로 인해 해사분쟁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해외로 유출되는 비용이 연간 2,000억원~5,000억원 규모로 추산되고, 무역량과 함께 국제상사분쟁 해결수단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으나 전문법원이 없어 기업이 불편을 겪거나 중재를 위해 높은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가 있음. 이에 해사 및 국제상사사건을 관할로 하는 전문법원을 설치하여 해사 및 국제상사사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법률시장의 국외 유출을 방지하여 국내 법률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법원의 종류로 해사국제상사법원 추가(안 제3조)

나. 해사국제상사법원은 해사민사사건, 해사행정사건, 국제상사사건을 심판함(안 제7장)

법률 제 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7종류로”를 “8종류로”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회생법원과”를 “회생법원ㆍ해사국제상사법원과”로 한다.

8. 해사국제상사법원

제5조제2항 중 “및 회생법원에”를 “ㆍ회생법원 및 해사국제상사법원에”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또는 회생법원의”를 “ㆍ회생법원 또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의”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회생법원과”를 “회생법원ㆍ해사국제상사법원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회생법원과”를 “회생법원ㆍ해사국제상사법원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40조의10제1항제2호에 따른 해사행정사건에 대한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심판권은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행사한다. 다만, 이 경우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해사국제상사법원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의 심판권은 단독판사가 행사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및 회생법원과”를 “ · 회생법원 및 해사국제상사법원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및 회생법원과”를 “ · 회생법원 및 해사국제상사법원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회생법원 사무국장 및”을 “회생법원 사무국장, 해사국제상사법원 사무국장 및”으로 한다.

제28조제1호 중 “또는 행정법원의”를 “, 행정법원, 해사국제상사법원 합의부 또는 제40조의10제1항제2호에 따른 해사행정사건을 심판한 해사국제상사법원단독판사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가정법원단독판사의”를 “가정법원단독판사, 해사국제상사법원단독판사의”로 한다.

제3편 제7장(제40조의8부터 제40조의10)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해사국제상사법원

제40조의8(해사국제상사법원장) ① 해사국제상사법원에 해사국제상사법원장을 둔다.

② 해사국제상사법원장은 판사로 보한다.

③ 해사국제상사법원장은 그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 · 감독한다.

④ 해사국제상사법원에 대해서는 제26조제5항·제6항 및 제29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40조의9(부) ① 해사국제상사법원에 부(部)를 둔다.

② 해사국제상사법원에 대해서는 제27조제3항 및 제30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40조의10(심판권) ① 해사국제상사법원은 다음의 사건을 심판한다.

1. 해사민사사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가. 「상법」 제4편제2장제4절 및 같은 법 제5편의 규정이 적용되는 민사사건

나. 「선원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민사사건

다. 「해운법」, 「항만운송사업법」, 「선박투자회사법」이 적용되는 사업 분야에서의 분쟁에 관한 민사사건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규정하는 사건 외에 다음의 각 민사사건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1) 선박(건조 중인 선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선박의 건조, 매매, 수선, 관리, 항해ㆍ입항ㆍ출항ㆍ정박(예선 및 도선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민사사건

2) 선박채권, 그 밖에 선박을 담보로 한 채권에 관한 민사사건

3) 선박의 충돌 또는 그 밖의 사고 등에 관한 민사사건

2. 해사행정사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법률(이하 “해사공법”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항고소송 및 당사자소송 사건

가. 선박 또는 선박의 건조, 매매, 수선, 관리, 항해ㆍ입항ㆍ출항ㆍ정박

나. 선원 또는 어선원의 고용·해고, 근로조건 또는 재해보상

다. 해운업, 해상보험업, 항만운송업 및 선박투자업

라. 항만(마리나항만을 포함한다)의 지정·개발·관리 및 사용

마. 항로 및 해사 안전, 해양경비, 수상구조

바. 수산업·수산자원 또는 어촌·어항·어장의 관리

사. 영해 및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공유수면(공유수면이 바다 및 바닷가인 경우로 한정한다) 등 해양공간의 관리

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

3. 국제상사사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과 관련된 요소가 있는 상사 법률관계 사건 및 그와 관련된 사무관리·부당이득·불법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청구에 관한 사건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다만, 「민사소송법」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품종보호권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송 사건, 소비자계약 또는 근로계약에 관한 사건은 제외한다.

가. 당사자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의 일상거소(자연인의 경우), 주된 사무소, 영업소, 정관상의 본거지 또는 경영의 중심지(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가 외국에 있는 경우

나. 당사자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이 외국인이거나 외국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다. 청구의 목적인 재산이 외국에 있는 경우

라. 법률관계의 의무이행지가 외국에 있는 경우

마. 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당해 분쟁의 대상이 외국 관련성이 있다고 동의한 경우

4. 다른 법률에 따라 해사국제상사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② 해사국제상사법원의 합의부에 대해서는 제32조제1항제1호·제2호·제5호·제6호를 준용한다.

③ 해사국제상사법원 합의부는 해사국제상사법원단독판사의 판결·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 중 제28조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한다.

제44조제2항 중 "회생법원장은"을 "회생법원장, 해사국제상사법원장은"으로 한다.

제62조의2제1항 전단 중 "특허법원이"를 "특허법원, 해사국제상사법원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및"을 ", 해사국제상사법원장 및"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의 관할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법원의 종류) ① 법원은 다음의 7종류로 한다. 1. ~ 7. (생 략) <신 설> ② (생 략) ③ 고등법원·특허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회생법원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가정지원, 시·군법원의 설치·폐지 및 관할구역은 따로 법률로 정하고, 등기소의 설치·폐지 및 관할구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법원의 종류) ① ---------8종류로-----. 1. ~ 7. (현행과 같음) 8. 해사국제상사법원 ② (현행과 같음) ③ ----------회생법원·해사국제상사법원과----------.
제5조(판사) ① (생 략) ② 고등법원·특허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 및 회생법원에 판사를 둔다. ③ (생 략)	제5조(판사) ① (현행과 같음) ② ----------·회생법원 및 해사국제상사법원에----------.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직무대리) ① 대법원장은 판사로 하여금 다른 고등법원·특허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 또는 회생법원의	제6조(직무대리) ① ----------·회생법원 또는 해사국

판사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상사법원의----------.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심판권의 행사) ① ~ ③ (생 략) ④ 지방법원·가정법원·회생법원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가정지원 및 시·군법원의 심판권은 단독판사가 행사한다. ⑤ 지방법원·가정법원·회생법원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가정지원에서 합의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심판권을 행사한다.	제7조(심판권의 행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회생법원·해사국제상사법원과----------. ⑤ ----------회생법원·해사국제상사법원과---------- ⑥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40조의10제1항제2호에 따른 해사행정사건에 대한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심판권은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행사한다. 다만, 이 경우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해사국제상사법원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의 심판권은 단독판사가 행
<신 설>	

	사한다.
제9조의2(판사회의) ① 고등법원·특허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 및 회생법원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지원에 사법행정에 관한 자문기관으로 판사회의를 둔다.	제9조의2(판사회의) ① ----------·회생법원 및 해사국제상사법원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각급 법원 등의 사무국) ① 고등법원·특허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 및 회생법원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지원에 사무국을 두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에 사무국 외의 국(局)을 둘 수 있다.	제10조(각급 법원 등의 사무국) ① ----------·회생법원 및 해사국제상사법원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고등법원과 특허법원의 사무국장 및 제1항에 규정된 사무국 외의 국을 두고 있는 지방법원의 사무국장은 법원이사관 또는 법원부이사관으로 보(補)하고, 고등법원 국장, 지방법원 사무국장(제1항에 규정된	③ ----------

사무국 외의 국을 두고 있는 지방법원의 사무국장은 제외한다) 및 국장, 가정법원 사무국장, 행정법원 사무국장, 회생법원 사무국장 및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지원의 사무국장은 법원부이사관 또는 법원서기관으로 보하며, 과장은 법원부이사관·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 또는 등기사무관으로 보한다.	----------회생법원 사무국장, 해사국제상사법원 사무국장 및----------.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8조(심판권) 고등법원은 다음의 사건을 심판한다. 다만, 제28조의4제2호에 따라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제외한다.	제28조(심판권) ----------. ----------.
1. 지방법원 합의부, 가정법원 합의부, 회생법원 합의부 또는 행정법원의 제1심 판결·심판·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	1. ----------, 행정법원, 해사국제상사법원 합의부 또는 제40조의10제1항제2호에 따른 해사행정사건을 심판한 해사국제상사법원단독판사의----------

2. 지방법원단독판사, 가정법원단독판사의 제1심 판결·심판·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으로서 형사사건을 제외한 사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2. ----------가정법원단독판사, 해사국제상사법원단독판사의----------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장 해사국제상사법원
<신 설>	제40조의8(해사국제상사법원장) ① 해사국제상사법원에 해사국제상사법원장을 둔다. ② 해사국제상사법원장은 판사로 보한다. ③ 해사국제상사법원장은 그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해사국제상사법원에 대해서는 제26조제5항·제6항 및 제29조제4항을 준용한다.
<신 설>	제40조의9(부) ① 해사국제상사법원에 부(部)를 둔다. ② 해사국제상사법원에 대해서

	는 제27조제3항 및 제30조제2항을 준용한다.
<신 설>	제40조의10(심판권) ① 해사국제상사법원은 다음의 사건을 심판한다. 1. 해사민사사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가. 「상법」 제4편제2장제4절 및 같은 법 제5편의 규정이 적용되는 민사사건 나. 「선원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민사사건 다. 「해운법」, 「항만운송사업법」, 「선박투자회사법」이 적용되는 사업 분야에서의 분쟁에 관한 민사사건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규정하는 사건 외에 다음의 각 민사사건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1) 선박(건조 중인 선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선박의 건조, 매매, 수선, 관리, 항해·입항·출항·정박(예선 및

	도선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민사사건 2) 선박채권, 그 밖에 선박을 담보로 한 채권에 관한 민사사건 3) 선박의 충돌 또는 그 밖의 사고 등에 관한 민사사건 2. 해사행정사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법률(이하 “해사공법”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항고소송 및 당사자소송 사건 가. 선박 또는 선박의 건조, 매매, 수선, 관리, 항해ㆍ입항ㆍ출항ㆍ정박 나. 선원 또는 어선원의 고용ㆍ해고, 근로조건 또는 재해보상 다. 해운업, 해상보험업, 항만운송업 및 선박투자업 라. 항만(마리나항만을 포함한다)의 지정ㆍ개발ㆍ관리

	및 사용 마. 항로 및 해사 안전, 해양 경비, 수상구조 바. 수산업·수산자원 또는 어촌·어항·어장의 관리 사. 영해 및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공유수면(공유수면이 바다 및 바닷가인 경우로 한정한다) 등 해양공간의 관리 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 3. 국제상사사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과 관련된 요소가 있는 상사법률관계 사건 및 그와 관련된 사무관리·부당이득·불법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청구에 관한 사건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다만, 「민사소송법」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품종보호권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송 사건, 소비자계약 또는

	근로계약에 관한 사건은 제외한다. 가. 당사자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의 일상거소(자연인의 경우), 주된 사무소, 영업소, 정관상의 본거지나 경영의 중심지(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가 외국에 있는 경우 나. 당사자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이 외국인이거나 외국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다. 청구의 목적인 재산이 외국에 있는 경우 라. 법률관계의 의무이행지가 외국에 있는 경우 마. 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당해 분쟁의 대상이 외국 관련성이 있다고 동의한 경우 4. 다른 법률에 따라 해사국제상사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② 해사국제상사법원의 합의부에 대해서는 제32조제1항제1호

	·제2호·제5호·제6호를 준용한다. ③ 해사국제상사법원 합의부는 해사국제상사법원단독판사의 판결·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 중 제28조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한다.
제44조(보직) ① (생 략) ② 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법원행정처차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 회생법원장은 15년 이상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보한다.	제44조(보직) ① (현행과 같음) ② ----------회생법원장, 해사국제상사법원장은----------.
제62조의2(외국어 변론 및 전담재판부의 설치) ① 특허법원이 심판권을 가지는 사건 및 「민사소송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의 제1심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제62조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당사자가 법정에서 외국어로 변론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62조의2(외국어 변론 및 전담재판부의 설치) ① 특허법원, 해사국제상사법원이----------. --------

제143조제1항 및 제277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특허법원장 및 「민사소송법」 제24조제2항에서 정한 지방법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가 있는 사건(이하 “국제사건”이라 한다)을 특정한 재판부(이하 “국제재판부”라 한다)로 하여금 전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생 략)	----------. ② ----------, 해사국제상사법원장 및----------. ③ (현행과 같음)